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1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.
- 나. 과태료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 처분할 때에도 법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.
- 다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	2차	3차이상
가.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22조 제2항제1호	200	300	500
나.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122조 제2항제2호	200	300	500
다. 평가대행자가 법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	법 제122조 제1항	500	700	1000
라. 평가대행자가 법 제2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·분석하거나 예측한 경우	법 제122조 제2항제3호	500	500	500
마. 평가대행자가 법 제23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	법 제122조 제2항제4호	500	500	500
바.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122조 제2항제5호	200	300	500
사.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정·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	법 제122조 제3항제1호	100	200	300
아.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·거부한 경우	법 제122조 제3항제2호	300	300	300